

절차적 규제 예비 제안

I. 소개

2024 기후법(St. 2024, c. 239)에 따라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위원회(“부지 선정위원회” 또는 “EFSB”)는 G.L. c. 164, §§ 69G~69J $\frac{1}{2}$ 를 포함, §§ 69O 및 69P, §§ 69R 및 69S, §§ 69T~69W의 변경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된 부분은 배치 위원회에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이 건설 및 운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주, 지역 및 지방 허가를 포함하는 단일 통합 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4 기후법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는 2026년 3월 1일까지 규정을 공포해야 하며,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부지 선정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관할권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St. 2024, c. 239, § 132.

2024 기후법은 부지 선정위원회가 규정을 마련할 때 공공사업부("DPU"), 에너지 자원부, 환경 보호부, 어류 및 사냥, 보존 및 휴양부, 농업 자원부, 매사추세츠 환경 정책법 사무소, 매사추세츠 교통부, 공공 안전 및 보안 행정 사무소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협의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2024 기후법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는 시설,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 또는 법령에 정의된 대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의 건설 전 또는 건설을 위해 모든 형태의 승인, 명령, 조건부 명령, 허가, 면허, 인증서 또는 허가가 필요한 다른 모든 기관, 당국 및 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t. 2024, c. 239, § 132.

이 예비 제안서에는 2024 기후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 변경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II. 주요 예비 제안 구성 요소 개요

부지 선정위원회의 규정은 980 CMR 1.00–12.00에 있습니다. 이 제안서에서 부지 선정위원회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고,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G.L. c. 164, §§ 69J, 69J $\frac{1}{2}$, G.L. c. 164, §§ 69K–69O $\frac{1}{2}$, G.L. c. 164, §§ 69T–69V에 따라 시설을 검토하는 부지 선정위원회 절차 및 G.L. c. 164, § 69W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신규 심사¹는 판결 절차이므로 매사추세츠 행정 절차법, G.L. 30A의 적용을 받습니다.

¹ 신규 심사는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 앞에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허가 신청에 대한 지자체 검토에서 제공된 문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EFSB에 이전 주 또는 지역 절차의 기록을 EFSB의 기록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G.L. c. 164, § 69W 에 따른 위원장의 최종 결정 모두 당사자가 매사추세츠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의 현행 절차 규정인 '심사 절차 진행에 관한 규칙'은 980 CMR 1.00 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 부지 선정위원회의 일반 정보 및 위원회 업무 수행 규칙은 980 CMR 2.00 에 있습니다. 이번 예비 제안은 두 규정 모두에 중대한 변경을 제안합니다.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는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통합 허가와 관련된 새로운 2024 기후법 절차를 다루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을 제안합니다:

- 980 CMR 13.00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통합 허가.
- 980 CMR 14.00 통합 지역 허가 신청에 대한 신규 심사
- 980 CMR 15.00 누적 영향 분석 및 부지 적합성 기준
- 980 CMR 16.00 사전 신고 협의 및 지역 사회 참여.

부지 선정위원회는 누적 영향 분석 기준과 사전 신고 협의 및 지역 사회 참여 제안은 부지 선정위원회가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발행할 다른 예비 제안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는 에너지 및 환경 사무국이 별도로 누적 영향 분석 지침 및 부지 적합성 지침 초안을 작성 중이며, 이는 부지 선정위원회 제안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신청자가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완적인 세부 지침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다음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 980 CMR 4.00 정보의 자유; 영업 비밀 보호
- 980 CMR 5.00 환경 평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980 CMR 7.00 장기 예측 및 보완 사항
- 980 CMR 8.00 석유 시설 건설 의향 통지서
- 980 CMR 9.00 해안 지역 시설 부지 선정, 감정 및 평가
- 980 CMR 11.00 수력 발전 시설 인허가

DPU 관할권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부지 선정 부서는 220 CMR 1.00 에 규정된 DPU 의 절차 규정을 따릅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2026 년 3 월 1 일 이후 모든 DPU 입지 및 허가 관할권이 부지 선정위원회로 이전되며 980 CMR 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DPU 는 2024 기후법 시행을 위한 규정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예비 제안서에 설명되어 있으며 맥락을 위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220 CMR XXX EFSB 신청 수수료
- 220 CMR XXX 공공 참여 부서
- 220 CMR XXX 참여자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

III. 규정 변경에 대한 논의

A. 기존 규정의 개정

절차 규정, 980 CMR 1.00: 부지 선정위원회는 새로운 통합 허가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980 CMR 1.00 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G.L. c. 164, §§ 69H-69W 에 따른 모든 부지 선정위원회 절차에 적용됩니다. 변경 사항은 2026 년 3 월 1 일에 발효되어 2026 년 7 월 1 일 이후에 접수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2024 기후법의 새로운 정의를 반영하기 위해 규정의 정의 부분을 수정할 것입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프로젝트 신청자가 시설 건설 청원서, 환경 영향 및 공익 인증서 청원서, 통합 허가 신청서 또는 신규 심사 신청서를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구체적인 제출 요건을 명시하고, 신청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신청 지침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본 규정은 신청자가 별도의 규정과 지침에 자세히 설명된 설비 공정성 법의 누적 영향 분석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절차 규정은 또한 신청자가 청원서 또는 신청서를 부지 선정위원회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신고 협의 및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의될 예정입니다. 제안된 규정에는 신청자의 신청서 제출 전 활동을 감독하는 DPU 의 공공 참여 부서가 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직권 조항이 반영될 것입니다.²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는 절차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전자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류가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프로젝트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예: 통행권 가장자리)에 대한 우편 통지 의무를 포함하여 기존의 우편 통지 관행을 규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 (a) 선형 프로젝트 또는 송전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같은 선형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경우 통행권 가장자리에서 300 피트 거리;
- (b) 전기 스위칭 스테이션, 변전소, 파이프라인 계량기 스테이션 및 가스 조절기를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4 마일 거리; 그리고

² 부지 선정위원회의 규정은 한 당사자가 다른 모든 당사자를 의사소통에 참여시키지 않고는 심사 절차의 쟁점에 대해 결정권자 또는 직원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980 CMR 1.03(8)(중재 절차의 최초 접수부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어떠한 당사자 또는 제한된 참여자도 심사 절차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위원장, 위원회 위원 또는 부지 선정위원회 직원과 해당 절차의 실질적인 사안에 관해 단독으로 의사 소통할 수 없음).

(c) 전기 발전 시설, 가스 저장 시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가스 압축기 스테이션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 마일 거리.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개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부지 선정위원회는 제안합니다.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에 적용되는 추가 개입 규칙은 980 CMR 13.00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는 실행 가능한 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공개 의견 청문회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된 규정은 위원장에게 온라인으로 증거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배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현재 내용적 접근 계획에 따라 내용적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현재 각 절차의 시작 시에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발행하는 절차적 기본 규칙에 반영된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안합니다. 본 규정은 심사 절차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의 인증을 요구하고,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당사자가 증거 조사 및 기록 요청에 대한 답변과 증언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할 의무를 인정합니다. 또한, 본 규정은 부지 선정위원회가 특정 문서를 증거 기록에 참조로 통합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위원회는 현재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하위 부분을 제안합니다. 규정에는 규정 준수 신고 및 프로젝트 변경 신고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며 이러한 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명시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에는 철거해야 하는 시설, 철거 시기, 철거 및 복구 비용 추정치, 철거 및 복구 활동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상품 제안 등을 정의하는 철거 및 부지 복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부지 선정위원회 업무 규정, 980 CMR 2.00: 부지 선정위원회는 2024 기후법의 요구 사항과 위원회 절차 업데이트를 반영하기 위해 980 CMR 2.00 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2024 기후법에 명시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 위원 6 명, 민간 위원 3 명 등 9 명의 위원에서 공공 위원 7 명, 민간 위원 4 명 등 11 명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변경으로 정족수 요건이 4 명에서 6 명으로 개정됩니다. 또한 본 규정은 2024 기후법의 새로운 법적 의무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의 목적을 수정하고 새로운 검토 범위를 추가할 것입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2024 기후법에 정의된 필수 조사 결과가 포함되도록 규정에서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G.L. c. 164, §§ 69J ~ 69J~~4~~에 따라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의 모든 조치를 면제하는 법적 조항을 통합, 또는 G.L. c. 164, §§ 69T ~ 69W, 포함,

매사추세츠 환경 정책법, G.L. c. 30, §§ 61 ~ 62L 에 따른 검토에서 면제하는 법 조항을 포함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공개 회의 진행에 대한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 매사추세츠 공개 회의법에 대한 개정된 참조를 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위원회 위원이 하이브리드 위원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하이브리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대중에게 적절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³

본 규정에는 2024 기후법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가 부지 선정위원회 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온라인 게시판을 구축 및 유지하고, 포괄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부분이 포함될 것입니다.⁴

B. 신규 규정

980 CMR 13.00: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통합 허가.

부지 선정위원회는 매사추세츠주 규정(“CMR”)에 새로운 법률 조항인 G.L. c. 164, §§ 69T, 69U, 69V 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제안합니다. 본 규정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통합 허가 신청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의 시행일은 2026 년 3 월 1 일이며, 2026 년 7 월 1 일 이후에 접수되는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제안된 규정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G.L. c. 164, §§ 69T, 69U 에 따라, 그리고 G.L. c. 164, § 69V 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제안된 규정은 신청자가 부지 선정위원회의 통합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 대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건설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청자가 G.L. c. 164, §§ 69U 에 따라 소규모 청정 에너지 송배전 기반 시설에 대해 부지 선정위원회의 통합 허가를 요청한 경우, 신청자는 부지 선정위원회의 통합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³ 법무부 규칙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공개적이고 물리적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공공 기관의 심의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하고 대체 가능한 수단”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사회 회의를 물리적 접근과 온라인으로 접근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회의로 진행합니다.

⁴ <https://www.mass.gov/info-details/executive-office-of-energy-environmental-affairs-ensuring-meaningful-access-for-persons-with-disabilities-policy> 참조.

제안된 규정에는 대규모 청정 에너지 송배전 기반 시설에 대한 신청서 제출 요건 또는 소규모 청정 에너지 송배전 기반 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위원회 통합 허가가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제안된 규정에는 대규모 청정 에너지 발전 시설 또는 대규모 청정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신청서 제출 요건 또는 소규모 청정 에너지 발전 시설 또는 소규모 청정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주정부 통합 허가가 포함됩니다.

2024 기후법에 따르면 부지 선정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서 제출 후 30 일 이내에 신청서의 완전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위원장이 완전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명시합니다. 완전성 결정의 일부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i) 시설,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설명, (ii) 사전 제출 요건을 만족스럽게 완료했다는 증거, (iii) 주 및 지자체가 권장 허가 조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신청 요구 사항, (iv) 부지 선정위원회가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증거. 본 규정은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 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완료 일정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장이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경우, 본 규정은 신청자가 신청 거부에 대한 장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표준 절차 일정을 개발하여 당사자들에게 절차의 주요 일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표준 일정은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가 법령에 규정된 기간(즉, 6 개월에서 15 개월 사이) 내에 프로젝트 검토를 완료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 일정 내에서 위원장은 특정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반영하거나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절차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 기후법은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주, 지역 및 지자체 허가 기관의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인정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의 규정은 이러한 내재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이러한 기관이 절차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는 절차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부지 선정위원회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으며, 그러면 위원장은 해당 기관에 시설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의 참가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또한 허가 기관이 각 기관이 발급해야 할 개별의 허가과 관련하여 권장 허가 조건에 대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권장 허가 조건 진술서에는 허가 기관이 발급할 허가에 대해 부지 선정위원회의 표준 조건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권장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권장 허가 조건의 진술서에는 해당 조건에 대한 근거와 적절한 경우 증빙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규정은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의 집행 권한을 허가 기관에 부여합니다.

980 CMR 14.00: 통합 현지 허가 신청에 대한 신규 심사.

부지 선정위원회는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통합 지역 허가 신청에 대한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신규 심사 절차를 정의하는 규정을 공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G.L. c. 164, §§ 69G, 69W. 본 규정은 2026 년 3 월 1 일에 발효되며 2026 년 7 월 1 일 이후에 신청되는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제안된 규정은 통합 지역 허가 신청에 대한 신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1) 지자체로부터 통합 허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또는 건설적 승인을 받은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지지자; (2) 지자체의 결정 또는 지방 건설 승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 또한, 제안된 규정은 지자체의 자원, 역량 및 인력으로 인해 지자체의 검토에 필요한 최대 12 개월의 기간 내에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의 허가 신청을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신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합니다.

본 규정은 신규 심사 요청에 대한 통지 및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기후법은 위원장이 공개 의견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은 위원장이 공개 의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청문회는 온라인 청문회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개입을 허용합니다.

증거 기록에는 현지 통합 허가 절차를 위해 작성된 문서와 위원장이 허가한 기타 관련 문서가 포함됩니다. 위원장은 절차 일정표를 발행하며, 여기에는 기간과 판단해야 할 사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온라인 증거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신규 심사 요청과 지자체의 최종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a) G.L. c. 25A, § 21 에 따라 에너지 자원부가 수립한 해당 시설에 대한 주 전체 허가 기준을 채택하는 규정과의 일관성; 그리고 (b) G.L. c. 164, § 69H 와의 일관성.

검토 후,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로부터 통합 허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또는 건설적 승인을 받은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제안자 또는 지자체의 결정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내려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은 지자체의 자원, 역량 및 인력으로 인해 지자체의 검토에 필요한 최대 12 개월의 기간 내에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의 허가 신청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장의 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12 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2024 기후법에서 요구하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지 선정위원회의 규정은 위원장의 최종 결정을 한 번만 규정하고 잠정 결정이나 잠정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 미사용 규정 폐지

부지 선정위원회의 규정에는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확성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 980 CMR 4.00 정보의 자유; 영업 비밀 보호
- 980 CMR 5.00 환경 평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980 CMR 7.00 장기 예측 및 보완 사항
- 980 CMR 8.00 석유 시설 건설 의향 통지서
- 980 CMR 9.00 해안 지역 시설 부지 선정, 감정 및 평가
- 980 CMR 11.00 수력 발전 시설 인허가

부지 선정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제안하는 이유는 부록 1 을
참조하십시오.

IV. 의견 요청

- 기존 부지 선정위원회 규정은 공청회 공고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청회에 대한 신문 공고 요건을 없애야 할까요? 이러한 공청회에는 어떤 유형의 공지가 더 효과적일까요?
- 제안된 프로젝트 위치에 대한 부지 선정위원회의 현장 방문을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까?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 부지 선정위원회는 해체 활동과 기대치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지자체가 자원, 역량 및 인력으로 인해 지자체 검토에 필요한 최대 12 개월의 기간 내에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의 허가 신청서를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부지 선정위원회는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12 개월 일정과 일관되게 12 개월 검토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까?
- 신규 심사의 경우, 부지 선정위원회 규정에서 신규 심사의 최종 결정에 대한 위원장의 재심리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까?
- 다른 주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에는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고 최종 허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허가 발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까? 부지 선정위원회는 어떤 제한적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까? 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사한 관행을 채택하는 데 법적인 장애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1 – 기존 규정의 폐지안

980 CMR 4.00 정보의 자유; 영업 비밀 보호

980 CMR 4.00: 정보의 자유; 영업 비밀 보호는 1975 년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표한 것으로, 오래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EFSB 에 접수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기록 요청에 대한 대응은 중앙 집중화 되어 있으며, 공공 기록 담당자가 적시에 대응을 보장합니다. 기밀 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 사항은 각 절차에 대한 근거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80 CMR 5.00 환경 평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24 기후법에는 이사회 또는 기타 개인의 모든 조치가 G.L. c. 164, §§ 69J ~ 69J4, 포함 또는 G.L. c. 164, §§ 69T ~ 69W, 포함에 따라 매사추세츠 환경 정책법, G.L. c. 30, §§ 61 ~ 62L 에 따른 검토에서 면제되는 법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980 CMR 7.00 장기 예측 및 보완 사항

980 CMR 7.00: 장기 예측 및 보충 자료는 1991 년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위원회가 DPU 로 행정적으로 이전되고 EFSB 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EFSB 에서 사용하지 않은 가스 및 전기 회사의 계획 절차를 설명합니다. 전기 회사의 경우 980 CMR 7.00 에 따라 시행된 장기 계획은 1990 년대 초 통합 자원 관리의 등장으로 종료되었으며, 1990 년대 후반 전력 구조조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가스 회사의 경우, 예측 및 공급 계획 절차는 여전히 DPU 에서 검토하지만(EFSB 는 검토하지 않음), 현재 이 절차에서는 980 CMR 7.00 이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DPU 는 본 규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980 CMR 8.00 석유 시설 건설 의향 통지서

석유 시설 건설 의향 통지서는 대형 석유 저장 시설(용량 2,100 만 갤런 이상)과 길이 1 마일 이상의 신규 송유관을 건설할 때 EFSB 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자에게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975 년 공포된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연료유 사용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감소했으며, 관할지 내에 석유 시설이 제안되지 않아 본 규정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저장 및 송유관 시설은 연방 및 주 관할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교통부의 송유관 안전 및 유해 물질 관리국은 유해 물질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49 CFR 파트 100~185)과 광범위한 송유관 안전 규정(49 CFR 파트 190~199)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시설 또는 송유관 건설에는 매사추세츠 종합 화재 안전 코드(527 CMR 1.01 이하) 및 매사추세츠 주 건축법(780 CMR 101.1 이하)의 적용을 받습니다.

980 CMR 9.00 해안 지역 시설 부지 선정, 감정 및 평가

980 CMR 9.00: 해안 지역 시설 부지 선정, 감정 및 평가는 1975 년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위원회(EFSB 의 전신)와 환경부 장관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한 후 채택되었습니다. MOU 와 관련 규정 980 CMR 9.00 의 주요 목적은 부지 선정위원회가 매사추세츠 해안 지역 관리 계획에 반영된 원칙을 결정에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MOU 및 980 CMR 9.00 의 기본 목적은 이미 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주정부의 환경, 건강, 에너지 및 자원 사용 정책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핵심 법적 요건에 의해 준수되고 있습니다.

980 CMR 11.00 수력 발전 시설 인허가

수력 발전 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1977 년부터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감독해 왔으며, 그 이전에는 다른 연방 기관에서 감독해 왔습니다. 매사추세츠 환경 기관이 수력 발전과 관련하여 일부 허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연방 정부의 영역입니다. G.L c. 164, § 69H1/2 는 EFSB 를 주 기관 및 신청자와 협력하여 연방 수력 발전 허가 절차에 개입하는 조정 기관(허가 기관이 아님)으로 설립했습니다. 이 권한이 부여되었을 당시에는 연방 허가 절차가 번거로웠고 FERC 관행에 따라 광범위한 행정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시설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EFSB 가 이러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FERC 는 1997 년에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주 정부 기관, 대중,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데 유리한 사전 신청, 협업 절차를 통해 수력 발전 인허가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사전 신청이 도입된 이후 수력 발전 제안자들은 EFSB 의 조정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으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FERC 와 직접 협력하고 있습니다. FERC 의 수력 발전 인허가 문제에 신청자가 EFSB 의 개입을 요청한 지 15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980 CMR 11.00 의 EFSB 규정은 FERC 가 수력 발전 시설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연방 규제 프로세스와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 = 응용 프로그램 창

대규모 청정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적용(예):

- 새로운(≥ 69 kV) 송전선로 새로운 회랑 내(≥ 1 마일)
- 기존 회랑 내 신규(≥ 115 kV) 송전선로(≥ 10 마일)
- 지방 구역 조례에서 면제를 요구하는 변전소들

- 해상 풍력 시설을 위한 상호 연결선
-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 100 MWh)
- 대규모 청정 에너지 발전 시설(≥ 25 MW)

소규모 청정 송배전 인프라 시설에 적용(예):

- 송전선 재도체 및 재건 프로젝트
- 기존 회랑 내의 신규/상당히 변경된 송전선로(< 10 마일)

- 새로운/상당히 변경된 송전선로가 새로운 회랑에 있음(< 1 마일)
- 지방 구역 조례에서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 변전소
- 특정 배포 수준 프로젝트(기준은 DOER에 의해 결정됨)

절차 단계/개월 (M)	사전 제출	M0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M14	M15
사전 제출 참여 요건	➤																
프로젝트 신청서 제출 및 완전성 결정 (신청 후 1개월 이내)	➤	➔	다른 허가 기관은 완전성 결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신청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공고 및 공개 의견 청취회 (완전성 결정 후 1개월 이내)			➔	다른 허가 기관은 개입자로서 절차에 참여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청문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공하며, 개입자로서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개입 및 보조금 판결				➔													
예비 절차 회의 및 절차 명령				➔													
권장 허가 조건 명세서								➔									
EFSB 판결 및 증거 청문회 (서면 발견 및 브리핑 포함)								➔									
EFSB 잠정 결정 및 의견 (직원 초안 작성 및 검토 포함)								➔									
최종 결정에 대한 이사회 투표														➔			➔